

의안번호	95
발의일자	2022. 9. 23.
회부일자	2022. 9. 28.

제335회 도의회 정례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2. 10. 5. (수)

『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

『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노성환 의원 외 19명

2. 제안이유

-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설치 등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식물방제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예찰·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예찰·방제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상위법에 따른 공동방제와 방제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8조~제9조)
- 사.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손실보상금평가단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10조~제11조)
- 아.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한 예산지원과 전문인력 활용을 규정함
(안 제12조~제13조)

4. 관련법령

- 「식물방역법」
- 「식물방역법 시행령」
- 「식물방역법 시행규칙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2. 9. 28. ~ 10. 3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80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

- 『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(2014.4.21. 제정)』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됨

입 법 사 례

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20. 12. 3. 제정
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16. 11. 8. 제정
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조례	2015. 7. 10. 제정
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17. 5. 18. 제정
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	2018. 12. 31. 일부개정
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15. 5. 1. 제정
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18. 12. 6. 일부개정
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	2021. 6. 25. 제정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본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병해충 예찰·방제단 설치 및 운영, 식물방제관, 방제계획수립 등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조례의 제명을 『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』에서 『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 등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함
-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병해충”이란 「식물방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말한다.
2. “병해충 예찰·방제”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(豫察) 및 방제업무를 말한다.
3. “공적방제”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.
4. “공적방제 대상 병해충”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,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.

⇒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『식물방역법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따르고 있음

- 안 제3조는 병해충 유입·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·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4조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‘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’의 설치를 규정함

『식물방역법』 제31조의4

제31조의4(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 등)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,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 및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.

② 병해충(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)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두며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둔다.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은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은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·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과 시·군·구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⇒ 법 제31조의4는 시·도병해충예찰·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안 제5조는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·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에 관하여 규정함

식물방제관 현황(2022.7.11. 기준)

구분	계	농진청	농식품부	검역본부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합계	2,338	109	1	2	4	11	4	7	4	28	13	5	378	187	340	202	171	153	474	173	72
진흥기관	2,278	109	1	2	4	11	4	7	4	28	13	5	364	182	311	202	171	153	466	173	68
시도청	60	-	-	-	-	-	-	-	-	-	-	-	14	5	29	-	-	-	8	-	4

○ 안 제6조는 예찰·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를 규정함

예찰·방제단의 임무(안 제6조제2항)

1. 농경지 병해충 예찰·방제 계획 수립
2. 병해충 예찰·방제 추진 및 지도·점검
3.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한 중앙 및 시·군 간 협조체계 구축
4.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한 예산·기술 지원
5.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
6. 병해충 진단·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
7. 병해충 예찰·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
8. 그 밖에 병해충 예찰·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

⇒ 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되는 예찰·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함

○ 안 제7조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예찰·방제계획 수립을 규정함

⇒ 법 제32조는 시·도지사가 방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시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

○ 안 제8조는 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제에 관하여 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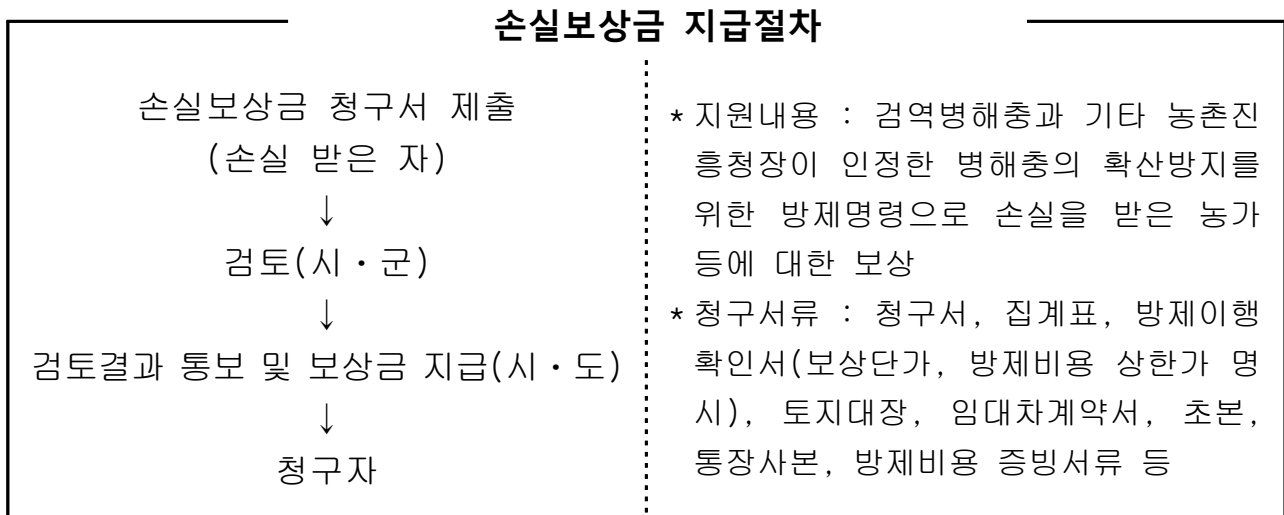
○ 안 제9조는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

『식물방역법』 제36조제1항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
2.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·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
3.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·폐기 등 조치명령
4.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,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·사용제한 등 조치명령

- 안 제10조는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
 ⇒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


- 안 제11조는 『식물방역법 시행령』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에 구성 및 운영 관하여 규정함
 ⇒ 영 제4조의2제3항은 손실보상금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농촌진흥청 고시를 통해 시·도지사가 운영하는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12조는 시·군 병해충예찰·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13조는 예찰·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함
-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신속한 병해충 예찰·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
- 2021년 우리 경북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며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해짐
- 과수 생산량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과·의 경우 우리 경북의 생산량이 전국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음
- 이에 경북의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조례의 조례 개정의 시의성이 인정됨
- 따라서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농작물 예찰·방제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여 시·도별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·방제단 조기 구성 및 운영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□ 목 적

- 예찰체계에 의한 정기·수시예찰 강화로 신속한 방제 기술지도
-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으로 현장의 신속진단 서비스 강화
- 병해충 예찰회의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정확한 발생정보 발표
- 식물방역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 예찰·방제체계 구축

□ 추진방향

- 병해충 예찰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제공
-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 추진체계 조기 정착
-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지원
- 돌발·외래병해충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적 방제 지원체계 확립

□ 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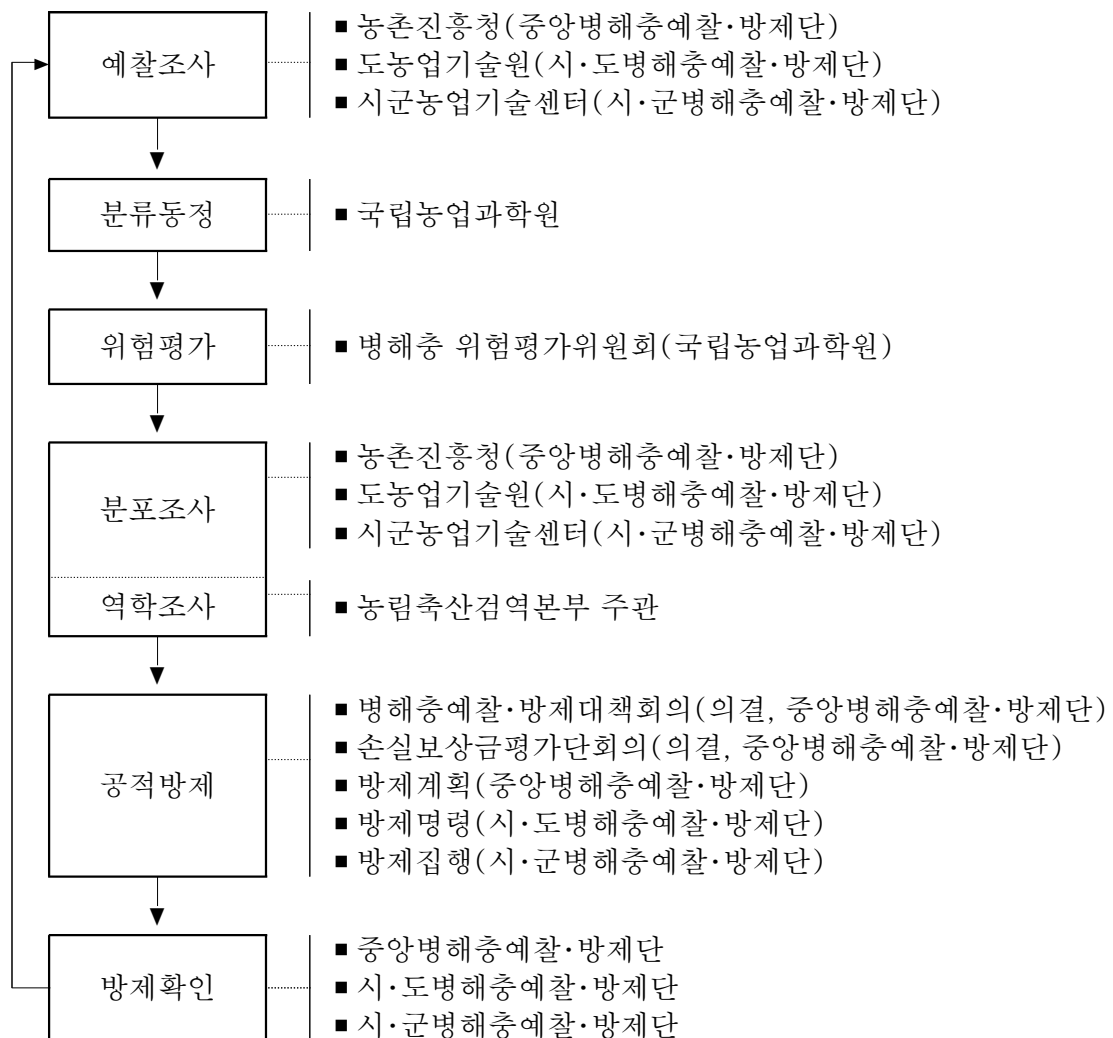
- 식물방역법 제30조의2~제39조(예찰 및 방제), 제43조(포상금)
-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~제5조(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등)
-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호(예찰 및 방제정보 확산)
-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에 관한 규정(농진청고시 제2020-36호)
-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·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(농진청 고시 제2017-37호)
-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(농진청고시 제2017-38호)
-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(농진청고시 제2017-39호)
-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(농진청훈령 제1127호)

□ 추진계획

-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 기술지원 체계 확립
 - 도, 시·군별 지역에 맞는 예찰·방제단 조기 구성 운영 : 165개소
 - *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4 :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·시·군에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을 두며,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병해충 예찰·방제업무 종사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운영 : 1,000명
 - 예찰·방제단 업무, 병해충 분포조사, 역학조사 지원 등
 -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(NCPMS) 보완 및 맞춤 정보 제공
 - 병해충 예찰, 관찰포 조사결과 입력, 자료 분석으로발생 예측
 - 수량감소 예측 및 병해충 판독 기능보완 등 시스템 보강
- * 병해충 사진, 잡초 등 DB 추가 보완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보급

<병해충 예찰·방제 체계>



- ◇ 예찰 및 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에서 병해충 업무를 총괄
- ◇ 도원 및 시군 센터에서는 병해충 담당부서를 두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작물별 담당자가 예찰·조사 및 방제 실시

① 과수화상병 발생현황(2021~2022)

- (2021) 12농가 5.98ha(안동 11농가 5.94ha, 영주 1농가 0.04ha)
- (2022) 발생없음

• 사과·배 재배규모 : 33,468농가 22,598.9ha * 사과 전국 60%
 - (사과) 30,066농가 21,255.9ha (qo) 3,402농가 1,343ha

② 과수화상병 사전대응 실적

- 겨울철 과수화상병 월동처 궤양제거 추진 : 1~3월
-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: 22개 시·군
 - 농작업 소독지도, 농작업자 이동관리 등 기본수칙 홍보
- 고위험 관리과원 등 사전예찰, 차단방역 : 3~5월
 - ※ 고위험과원 : 전년도 발생 동일경작자 과원, 부분제거 과원, 인근 과원 등
- RT-PCR(실시간유전자검사)을 통한 양성과수 사전제거 : 4월
 - ※ 숨어있는 화상병균 찾아내어 사전제거로 선제적 확산 차단
 - 전년 발생지역 RT-PCR 양성판정 과원 : 안동시, 7농가 0.12ha
- 전시군 최적기 약제방제 예산 13,720백만원 확보 : 4회, 3~6월
 - 개화 전 1회(3~4월), 개화기 2회(4~5월), 생육기 1회(5~6월)
- 과수화상병 발생조사(정기예찰) 실시 : 4회, 사과·배 전면적
 - ※ (1차) 5.2. ~ 13. (2차) 6.7. ~ 17. (3차) 7.4. ~ 15 (4차) 10.24. ~ 11.4.

③ 향후 추진계획

-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
-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추진
- 동절기 고위험 관리과원 집중 관리 및 농업인 이행사항 홍보

□ 선발 및 운영 근거

- 식물방역법 제31조2(식물방제관), 3(식물방제관의 권한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8(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), 농촌진흥청고시 제2017-38호(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)

□ 역할 및 자격

- 역할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
- 자격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

□ 권한

-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병해충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·작업장·창고,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
-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정도와 병해충의 감염원, 유입경로, 확산경로 등 역학조사와 관련된 지원업무
- 검사 및 역학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·작업장·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,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의뢰

□ 선발

-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물방제관 추천서(붙임과일)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로 제출
 - * 추천서 제출 시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확인서도 함께 제출
- 전문성, 자격 및 경력,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 후 통보